

공 보

제571호 2016. 12. 28.(수)

선 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342호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3

거창군 조례 제2343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7

거창군 조례 제2344호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6

거창군 조례 제2345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20

거창군 조례 제2346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34

거창군 조례 제2347호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41

거창군 조례 제2348호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 44

거창군 조례 제2349호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61

거창군 조례 제2350호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거창군 조례 제2351호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74

거창군 조례 제2352호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 89

거창군 조례 제2353호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의원발의> 91

거창군 조례 제2354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원발의> 123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212호 거창군 창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 126
 거창군 규칙 제1213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28
 거창군 규칙 제1214호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152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02호 거창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154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6-129호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고시 163
 거창군 고시 제2016-130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협조 165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6-1270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공고문 게재 의뢰 .. 167
 거창군 공고 제2016-1273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공고문 게재 의뢰 .. 170
 거창군 공고 제2016-1275호 거창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173

회 람									
--------	--	--	--	--	--	--	--	--	--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6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342호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읍·면사무소”를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u>군·읍·면사무소</u>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u>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u>-----</p>

[별표]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

기 관 명	소 재 지
거 창 군 청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u>거창읍 행정복지센터</u>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90
주상면 사무소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655
응양면 사무소	거창군 응양면 응양로 1431
고제면 사무소	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 14
북상면 사무소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10
<u>위천면 행정복지센터</u>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24
마리면 사무소	거창군 마리면 빼재로 18
남상면 사무소	거창군 남상면 인평길 36
남하면 사무소	거창군 남하면 영서로 41
신원면 사무소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67
<u>가조면 행정복지센터</u>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8
가북면 사무소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17-16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86
----------	-----------

제출연월일	2016. 11. 2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군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른 읍·면 기관명을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읍·면 기관명 변경함(안 별표)

- 거창읍사무소 ⇒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 위천면사무소 ⇒ 위천면 행정복지센터
- 가조면사무소 ⇒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협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11. 02. ~ 11. 2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조례 개정현황
 - 개정완료(4곳): 진주시, 김해시, 의령군, 남해군
 - 개정 중(3곳) :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6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343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공장의 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호와 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3.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 및 투자유치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구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 산업단지 용지 매입
3. 공장부지 매입비 용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기금 용자대상, 용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국내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제7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기업, 관내 신·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도외기업 본점의 관내 이전 지원) 군수는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외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제7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관내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관내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증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대금의 완납 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다시 분양하는 토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는 토지분양대금의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 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 분양가격 감면에 따른 부족 사업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기반시설 사업지원 등) 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국내·외국인의 투자 사업 및 기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임대용지 공급)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채권확보)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 이행확보를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1순위 저당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인투자의 지원

제17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거창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8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지원제한)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0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보조금의 사후관리 등

제2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용자금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용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용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당초 사업계획서에 따라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 받은 인원을 3년 이내 유지 못하는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용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5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사업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중지원 금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용자금은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27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개인이나 단체·기관·기업·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된 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87
----------	-----------

제출연월일	2016. 11. 2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015.4.02.)에 맞춰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증설투자비 지원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체계 정비함

- (현행)총칙-투자유치 지원체제-외국인투자의 지원-국내기업 투자지원-보칙
(변경)총칙-투자유치 지원체제-국내기업 투자지원-외국인투자의 지원-보조금의 사후관리 등-보칙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015.4.02.)에 맞춰 조문 체계 정비: 이 조례의 주 적용대상인 국내기업 투자지원 내용을 외국인투자의 지원 보다 앞에 기술하여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투자유치위원회 정비(안 제3조)

- 위원장 변경: 공동위원장 ⇒ 군수

다. 관내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신설(안 제12조)

라. 산업용 부지 매입 및 임대지원 조항 신설(안 제15조)

마. 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조항 신설(안 제25조)

-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 사업 이행 의무 명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지방자치법」 제9조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
-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규정」 제9조의2

나. 예산 조치: '17년도 예산 980,736천원 기확보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10. 28. ~ 11.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조례현황

(가) 경상남도 시·군 조례: 19건

(나) 도 조례에 따라 개정된 시·군: 7곳(양산시, 거제시, 창원시, 진주시, 밀양시, 사천시, 함안군)

(다) 도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 중인 시·군: 1곳(창녕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6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344호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1명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회의에 부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에 부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심의요청) 거창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88
----------	-----------

제출연월일	2016. 11. 2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재기재하여 발생하는 법령 불부합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목적조항 정비함(안 제명, 제1조)

-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근거: 법 제60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되어있던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이 법에 명시되어 위임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제명 및 목적조항에서 관련 내용 삭제함

나. 위원회 구성관련 법령 재기재사항 삭제함(안 제2조)

- 법령개정사항(위원장이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 위촉위원 중 관련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조항 삭제, 위촉위원 임기 규정 신설) 미반영으로 법령 불부합하여 삭제

다. 위원회 기능관련 법령 재기재사항 삭제함(현행 제4조)

- 법령 개정사항(관련 업체가 구매가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 과징금에 관한 사항) 미반영,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자문”기능까지 조례에 규정하여 법령 불부합하여 삭제

라. 영 제109조에서 위임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안 제2조 ~ 제8조)

- 위원장의 직무, 부위원장, 간사, 회의, 심의요청, 의견청취, 수당, 운영세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11. 2. ~ 11.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안 제2조제1항 위촉위원 성별고려사항)

(6) 도내 조례 개정 현황

○ 개정완료(13곳):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입법예고 중(5곳): 경상남도,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6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345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석·채석
(이하 “채광물”이라 한다)의 가격과 지형변경”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25조 제목 “(채광물 채취료 등)”을 “(토석채취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광물 채취”를 “토석 채취”로 “채광물 채취료”를 “토석 채취료”로 “원석시가”를 “토석시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채광물”을 “토석”으로 “채광물 채취료”를 “토석 채취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토석시가”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제28조제2항후단과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려면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대부”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대부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과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특산품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 시설

-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
⑦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3호 중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을 “2012년
12월 31일”로 “점유·소유”를 “소유”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7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4항·제5항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물품출납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이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를 “군수가
지명한 검사공무원이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1조제1항후단을 삭제한다.

제81조의2를 삭제한다.

제8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3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제35조 제3항, 제81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p> <p>제12조(매각대금 등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으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p> <p>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삭제 ‘14.10.0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영 제29조제1항제7호 및 영 제38조제1항제2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p> <p>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p> <p>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p>	<p>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p> <p><삭 제></p> <p>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삭제 ‘14.10.01) ② ----- ----- ----- ----- -----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삭 제></p>

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4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석·채석(이하 “채광물”이라 한다)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생략)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 6. (생략)

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제24조제

제24조(대부료율) ①-----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 변경-----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6. (현행과 같음)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5조(토석채취료 등) ①-----

1항단서에 따른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세제곱미터당 그 연도의 원석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원석시가를 결정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 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② 군수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1. ~ 2. (생략)

③ (생략)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신 설>

-----토석 채취-----

-----토석 채취료-----

-----토석시가-----

② 제1항의 “토석시가”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⑤-----토석

-----토석-----

토석 채취료-----

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후단 삭 제>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려면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영 제35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3항에 의한 감액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로 하며,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3. (생략)

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 및 대부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12항-----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특산품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⑤ -----

-----대부
-----대부료

⑥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5. ~ 6. (생략)</p> <p>7. <u>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치 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 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 지의 효용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토지</u></p> <p>8. ~ 9. (생략)</p> <p>10. <u>2003년 12월 31일</u>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 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11. (생략)</p> <p><u>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 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p><u>1.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u></p> <p>2. ~ 6. (생략)</p> <p>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u>아파트형공장</u>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8. ~ 9. (생략)</p> <p>② (생략)</p> <p>③ <u>제1항, 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u></p> <p>④ (삭제 2014.10.01)</p>	<p>4.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 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 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5. ~ 6. (현행과 같음)</p> <p>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 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 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8. ~ 9. (현행과 같음)</p> <p>10. <u>2012년 12월 31일</u>----- ----- ----- -----</p> <p>11. (현행과 같음)</p> <p><u>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u> ----- ----- ----- ---</p> <p><u><삭 제></u></p> <p>2. ~ 6. (현행과 같음)</p> <p>7.----- -----<u>지식산업센터</u> ----- -----</p> <p>8. ~ 9.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	--

⑤ (생략)

제52조(변상조치)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관사의 시설 또는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훼손·파괴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1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생략)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 ~ ⑦ (생략)

제75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분입물품출납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이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8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삭제>

제71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감정평가업자-----

⑤ -----감정평가업자-----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75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
-----군수가 지명한 검사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후단 삭제>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82조(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공유재산
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완료한 후에 지급
할 수 있으며,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③ ~ ④ (생략)

제83조(토지 등의 합필 및 분할) ① (생략)
② 군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
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등은 분
할한 후의 각 토지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
하며,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삭 제>

제82조(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토지 등의 합필 및 분할) ①(현행과 같음)

②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제2조제4호 따른 감정평가업자-----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89
----------	-----------

제출연월일	2016. 11. 2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16.7.12.시행)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과 문화시설 등에 대한 대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16.7.12.) 내용 반영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대부 등이 가능한 공유재산 대상 삭제(안 제23조)

-근거: 조례 위임근거인 영 제29조제1항제7호 삭제됨

○ 일자리창출시설 대부료 감면규정 신설(안 제30조제6항)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일자리창출 시설의 경우 대부료를 50퍼센트 이내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함

○ 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 분납 이자율,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삭제
(안 제28조제2항후단제4항, 제35조제3항, 제81조제1항후단, 제81조의2)

-이유: 분납 이자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

-근거: 영 제32조, 제39조, 제81조, 제82조

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위임행정규칙) 제정 사항 반영 (안 제34조제4호)

○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 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매각 사항 신설

다. 법령과 달리 규정되어있어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삭제 및 정비함 (안 제12조, 제75조, 제82조제2항)

- 매각대금 등의 사용,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은닉 공유재산 신고자 보상관련
- 근거: 영 제10조, 제84조제3항, 제90조

라. 감정평가의뢰대상 확대(자치법규 정비과제 정비)(안 제71조, 제83조)

- (현행)감정평가법인 ⇒ (개정)감정평가업자
- 영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개정으로 일반재산 매각교환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마. 그 밖에 인용 법령 및 조문 등을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29조, 제32조, 제39조, 제81조,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자부 고시)」(위임행정규칙) 제1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11. 2 ~ 11. 20.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 현황

○ 개정완료(2곳): 고성군, 하동군

○ 입법예고 중(5곳): 창원시, 양산시, 진주시, 함양군, 남해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6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346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상군인”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
8. “순직군인”이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
9. “공상군인”이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전몰군경의 유족과 참전유공자”를 “전몰군경과 순직군인의 유족,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예수당: 전몰군경과 순직군인의 유족,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예수당

가. 전몰군경의 유족, 참전유공자: 월 10만원

나.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순직군인의 유족
: 월 3만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전몰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u>전몰군경의 유족과 참전유공자</u>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u>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u></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p> <p>7. “전상군인”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p> <p>8. “순직군인”이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p> <p>9. “공상군인”이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p> <p>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 <u>전몰군경과 순직군인의 유족,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u>----- ----- ----- -----</p> <p>1. <u>명예수당: 전몰군경과 순직군인의 유족,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u></p>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순직군인의 유족: 월 3만원의 명예수당
- 관련조문: 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 선양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 비용(a - b)	360	360	355	350	345	1,770
세출	도비	-	-	-	-	-
	군비	360	360	355	350	345
	소계(a)	360	360	355	350	345
세입	지방세	-	-	-	-	-
	소계(b)	-	-	-	-	-

3. 관련 의견

-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순직군인의 유족의 예우를 위한 최소 경비 지원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순직군인의 유족의 명예수당: 360백만원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거창군 국가유공자 예우 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90
----------	-----------

제출연월일	2016. 11. 2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6.25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순직군인의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을 통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추가 지원대상인 전상·순직·공상군인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7호 ~ 제9호)

나. 명예수당 지급대상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순직군인의 유족: 월 3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조치: '17년도 예산 36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6. 10. 31. ~ 11. 21.
 - (나) 예고결과: 의견있음(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다른 지자체 현황 : 창녕군, 산청군, 양산시, 고령군, 봉화군, 군위군 등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통보내용)
상이군경회 거창군지회 · 전물군경유 족회거창군 지회 · 전물군경미 망인회거창 군지회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 - 참전유공자 미망인과 공상군경, 전상·공상·순 직군경 미망인, 공상·순 직군경 유족으로 범위 확대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범위 변경 - 참전유공자와 전상· 공상군인 미망인, 순직군인의 유족	○ 일부 반영 (군경 ⇒ 군인만 지원 소방·경찰공무원 제외)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6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347호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의료·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홍보)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16 ~ 68
----------	-----------

발의일자	2016. 11. 21.
발 의 자	강철우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군수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 시책 마련 및 추진, 관계법령의 책무 성실 이행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라. 복지단체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마.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안 제6조)

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시행을 명시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6. 11. 26. ~ 11. 30.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6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348호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를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4호·제5호·제8호·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6호를 제3호로 제7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중전 제2호)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 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중전 제6호) 중 “시장 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곳으로서 등록시장은”을 “곳으로서”로 “인정시장은 규칙”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장 활성화사업”을 “상권활성화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4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장 제목 중 “인정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중 “인정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정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인정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항 중 “인정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한다.

제3장 장 제목 및 제14조 중 “시장 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제목 및 본문 중 “시장 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등록 또는 인정”을 “인정”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14조 제목 및 본문 중 “시장 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4장 제목 중 “등록”을 “신고”로 한다.

제15조 중 “신청”을 “신고”로 한다.

제16조 제목 및 본문 중 “등록”을 “신고”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1조 중 “우리 군”을 “군”으로 “자에 한한다.”를 “사람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중 “법 제65조제7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후”를 “법 제65조제7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를 “시장관리자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9장(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하고, 제4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조례 제1854호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제정 2007.11.07.)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9.“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 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p>	<p><삭 제></p>
<p>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u>곳으로서 등록시장</u>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u>인정 시장</u>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p>	<p>제3조(시장의 구역) ----- ----- -----<u>곳으로서</u> ----- ----- 「<u>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u>」 (이하 “<u>규칙</u>”이라 한다)-----</p>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p>	<p>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p>
<p>① (생략)</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u>시장 활성화사업</u>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② ----- -----<u>상권 활성화사업</u>----- -----</p>
<p>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u>재래 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u>」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 ----- ----- ----- 「<u>전통 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u>」----- ----- ----- -----</p>
<p>④ ~ ⑤ (생략)</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u>제2조 제7호</u>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p>	<p>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u>제2조 제4호</u>-----</p>

현 행	개 정 안
<p>각 호의 기준에 <u>의한다.</u> 1. ~ 5. (생략) ② (생략)</p> <p><u>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및 관리</u></p> <p><u>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채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u> 1. ~ 2. (생략)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u>자</u>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p> <p><u>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u>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u>의한</u>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u>인정시장</u>으로 고시한 후 <u>인정시장</u>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u>인정시장</u>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p> <p><u>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따른다.</u>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u>제2장 시장의 인정 및 관리</u></p> <p><u>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u>----- ----- ----- ----- -----</p> <p>1. ~ 2. (현행과 같음) ② ----- -----<u>사람을</u> ----- -----</p> <p><u>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u> ----- ----- ----- -----</p> <p>② -----<u>따른</u>----- ----- -----</p> <p>③ <u>시장</u>-----<u>시장</u>----- ----- ----- ----- -----<u>시장</u>----- -----</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p> <p>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p> <p>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p> <p>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p> <p>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p> <p>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p> <p>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p> <p>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p> <p>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p> <p>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군수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3장 시장 활성화구역 지정</p> <p>제11조(시장 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 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시장 활성화구역의 범위) <u>시장 활성화구역</u>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u>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u>,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p>	<p>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u>상권활성화구역</u>----- <u>인정</u>----- ----- -----</p>
<p>제13조(시장 활성화구역 지정절차) <u>군수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 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u></p>	<p>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 <u>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에 따른다.</u></p>
<p>제14조(시장 활성화구역의 관리) <u>군수는 시장 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u></p>	<p>제14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 <u>상권활성화구역</u>----- -----</p>
<p>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p>	<p>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u>신고</u></p>
<p>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u>군수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u></p>	<p>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 ----- ---<u>신고</u>-----</p>
<p>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u>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u></p>	<p>제16조(임시시장의 <u>신고</u>) ----- ----- ----- ----- <u>신고</u>-----</p>
<p>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u>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 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u> <u>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u> <u>에는 군수는 그 내용을 군 공보에 공고 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u></p>	
<p>제27조(예산의 지원) ① (생략) <u>② 군수는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지원 신청이</u> <u>있는 경우 법 제65조제7항, 「보조금의</u> <u>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 조례</u> <u>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후 예산의</u> <u>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u>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u> <u>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u> <u>에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u> <u>따라 신청, 정산하고 집행잔액, 부가</u> <u>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u> <u>하여야 한다.</u></p>	<p>제27조(예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u>법 제65조제7항에</u> <u>따라</u>----- ----- <u><삭 제></u></p>
<p>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u>상인회는</u> <u>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u> <u>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1. <u>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u> 2. <u>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u> <u>사업 추진실적</u> ② <u>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u> <u>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u> <u>여야 한다.</u> 1. <u>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및</u> <u>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u> <u>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u> 2. <u>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u></p>	<p><u><삭 제></u></p>
<p>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u>규칙</u> <u>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u> <u>해당하는 자 중에서 <u>시장관리자를 직접</u></u> <u>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u> ② (생략)</p>	<p>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 ----- -----<u>시장관리자를</u>---- ----- 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u>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u></p> <p>1. <u>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u></p> <p>2. <u>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u></p> <p>3. <u>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 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u></p>	<p><삭 제></p>
<p><u>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u>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라 정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u>시장활성화구역</u>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② ~ ④ (생략)</p>	<p><u>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u> -----</p> <p>-----</p> <p>-----</p> <p>-----<u>상권활성화구역</u>-----</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u>제35조(위탁관리) ①</u> 군수는 시장, <u>시장활성화구역</u>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u>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u>제35조(위탁관리) ①</u> -----<u>상권활성화구역</u>-----</p> <p>-----</p> <p>-----</p> <p>-----<u>「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u>에서-----</p> <p>-----</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u>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u>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 <u>시장활성화구역</u>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p>	<p><u>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u> -----</p> <p>-----</p> <p>-----<u>상권활성화구역</u>-----</p> <p>-----</p> <p>-----</p>

현 행	개 정 안
<p>② ~ ④ (생략)</p> <p>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p> <p>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p> <p>제41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다.</p> <p>제4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p> <p>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만약,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제43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p> <p>제4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45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거창군세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p>	<p><삭 제></p>
<p>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규칙</u>으로 정한다.</p>	<p>제46조(시행규칙) -----<u>시행에</u> -----<u>시행규칙</u>-----</p>
<p>부칙(조례 제1854호 제정 '07.11.07.)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p>	<p>부칙(조례 제1854호 제정 '07.11.07.) <삭 제></p>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92
----------	-----------

제출연월일	2016. 11. 2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법령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요건이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되는 등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바 없이 조례로 규정하여 불이익이나 부담을 주는 조항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재래시장(등록시장, 인정시장) ⇒ 전통시장
- 시장활성화구역 ⇒ 상권활성화구역

다. 법령 개정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요건 완화함(안 제16조, 제17조)

- 임시시장의 등록 ⇒ 신고

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바 없이 조례로 규정하여 부담이나 의무부담을 주는 조항 삭제함(안 제8조 ~ 제10조, 제26조, 제30조, 제33조)

-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상인회의 등록취소, 상인회의 보고 및 자료제출의무,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마. 법령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여 발생하는 법령 불부합, 법령 제개정 미반영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해당 조항 삭제 및 정비(안 제2조, 제3장, 제9장)

- 법에서 정의한 용어 삭제: 재래시장, 임시시장, 상점가, 상인회, 시장관리자
- 시장활성화구역 요건 조항 삭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절차 ⇒ 지정 및 변경 절차
- 과태료 부과징수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화 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 삭제(조례 제2303호 부칙 제2조)

- 삭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14조·제19조의2·제65조·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9. 30 ~ 10. 2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6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349호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2.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3.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임산부 전용주차구역) ① 군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거창군 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③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을 위한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역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6조 제목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공영주차장의 수탁자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 있는 법인과 비영리법인

제9조제2항에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는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요금 면제)

5. 경남i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제11조제2항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 제8호에 따른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은 “3퍼센트”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영 제10조제1항”을 “영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u></p>	<p><u>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u></p>
<p><신 설></p>	<p>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p> <p>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2.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3.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p>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신 설></p>	<p>제2조의3(임산부 전용주차구역) ① 군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거창군 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③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을 위한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역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u>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군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군수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u></p> <p>② 「<u>도로교통법</u>」 제2조제22호에 <u>따른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u></p> <p>③ <u>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u></p> <p>1. <u>제8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에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u></p> <p>2. <u>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5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u></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 ----- -----</p> <p><삭 제></p> <p>③ <u>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u></p>
<p>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u>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군이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u></p> <p>2. <u>공공 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있는 법인과 비영리공익법인</u></p> <p>3. <u>그 밖에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수탁자의 설정방법과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u></p>	<p>제6조(공영주차장의 수탁자 자격) ①----- ----- ----- ----- -----</p> <p>1. ----- -----</p> <p>2. 「<u>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있는 법인과 비영리 법인</p> <p>3. -----</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p> <p>1. ~ 2. (생략)</p> <p>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생략)</p> <p>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생략)</p>	<p>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p> <p>4.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p> <p>4. (현행과 같음)</p>
<p>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생략)</p> <p>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 비용을 공영주차장 요금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따른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주차요금 징수기준은 월정기 주차권 요금(주, 야간)으로 한다.</p>	<p>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영 제10조제2항----- ----- ----- ----- -----</p>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93
----------	-----------

제출연월일	2016. 11. 2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계약방법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경남!다누리카드 소지자의 자동차 주차요금의 2분의 1 감경 규정 신설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신설함(안 제2조의2)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주차수요조사, 주차 시설조사 방법 명시

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신설함(안 제2조의3)

-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관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성별영향분석 결과 반영함

다. 법령 위임없이 신설된 의무규정인 가산금 부과대상 정비(안 제3조제3항)

- 「주차장법」 제9조제3항: 가산금액 조례로 위임(주차요금의 4배 이내)
-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가산금 부과대상 직접 규정, 조례위임 없음

라. 수탁자의 자격을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마. 수탁자의 선정방법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 삭제(안 제6조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위탁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 할 수 있으므로, 법령 위 반사항으로 삭제함

바. 주차요금 50퍼센트 감경대상 추가함(안 제9조제2항제4호·제5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충전 시 면제), 경남!다누리카드 소지자
- 근거: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사.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함(안 제12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은 “3퍼센트”로 한다.

아. 인용 법령 및 조문 변경함(안 제15조,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4조, 제9조제1항 및 4조제2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4조,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2조

「경상남도 저출산 대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 자연환경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10. 28. ~ 11. 1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안 제2조의3(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신설)

(6) 전국 조례 개정 현황

○ 개정완료: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산광역시 외 31건

○ 경남개정완료: 김해시, 고성군, 하동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6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350호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을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도시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위탁 대상업무)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u>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u>」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 설></p> <p>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위탁 대상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u>」를----- -----</p> <p>제11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u>관광진흥법 시행령</u>」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2조(시행규칙) ----- -----</p>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91	제출연월일	2016. 11. 2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할 경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시 미취사 객실 허용기준에 대한 조례위임사항 신설함(안 제11조)

-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사항: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6. 10. 24. ~ 11.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조례 개정 현황

개정(3)	입법예고 등(9)	미개정(5)
김해시, 사천시, 고성군	창원시, 통영시, 양산시, 거제시, 산청군, 함양군, 함안군, 남해군, 하동군,	밀양시, 진주시, 합천군, 창녕군, 의령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6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351호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를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4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으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입주자(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때”를 “경우”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단서 규정”을 “제2항 단서”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대표자의 선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하 “단체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단체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 대표자”라 한다)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조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그 선정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에 소재한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p> <p>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p> <p>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p> <p>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p> <p>4.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p> <p>5. 거창군 소속공무원</p> <p>③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5호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p>	<p>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삭 제></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42조 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p> <p>② (생략)</p> <p>제8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분쟁당사자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입주자(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p>	<p><삭 제></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총괄---</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경우 ----- -----</p>

현행	개정안
<p>제11조(조정외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p> <p>2. ~ 6. (생략)</p> <p>② (생략)</p> <p>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11조(조정외의 거부 및 중지) ①----- ----- ----- ----- ----- ----- -----</p> <p><삭 제></p> <p>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수당 등) ----- ----- -----범위----- ----- -----</p>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신청내용			
분 쟁 조 정 안			
<p>「<u>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u>」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u>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u> 위원장 인</p> <p>(분쟁 각 당사자 귀하)</p>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출 석 대상자	성 명		자 격	
	주 소			
출 석 요 청 일 자	년 월 일(:)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임			
출 석 장 소				
<p>「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u>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u> 위원장 인</p> <p>(출석대상자 귀하)</p>				
<p>※ 주의사항</p> <p>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청서, 신분증, 도장 및 이 분쟁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p>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중지) 통보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u>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u>」 제11조에 따라 위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u>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u> 위원장 인</p> <p>(분쟁 각 당사자 귀하)</p>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서						
일 시				장 소		
참석위원						
조정대상	단 지 명					
	위 치					
	신 청 인					
	피신청인					
신청내용						
조정결과						
<p>「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함.</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p>						
직 위	성 명	서명또는날인	직 위	성 명	서명또는날인	
위원장			위원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95
----------	-----------

제출연월일	2016. 11. 2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주택법」에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법·제정('16.8.12.)됨에 따라 그 입법취지에 맞게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범위에 맞게 조례명 및 목적을 변경함(안 제명, 제1조)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을 목적으로 함
⇒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함
- 위임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

③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나. 상위법령과 불일치조항 정비(안 제2조, 제8조제1항)

- 적용범위: 법 제정 전 위임법인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에서는 제한범위가 있었으나 제정법에는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
- 분쟁조정 신청 시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 신청요건 삭제
- 불합리한 규제개선

다. 상위법령 재기재·확인에 불과한 조항 삭제(안 제3조·제4조)

-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기능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기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구성)

라. 대표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함(안 제10조의2)

- 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8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11. 03. ~ 11. 2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조례 개정현황

○ 입법예고 중(5곳): 시, 밀양시, 함안군, 산청군, 의령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6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352호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

의안 번호	2016 ~ 94
----------	-----------

제출연월일	2016. 11. 25.
제 출 자	거창군수

1. 폐지이유

농어촌주택사업 및 국민주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융자금 상환이 만료(2011년 말)되고, 농어촌주택사업도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으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추진되고 있어 특별회계의 운용목적 달성하여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택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11. 03. ~ 11. 2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도내 조례 폐지현황: 10곳

○ 창원, 진주, 사천, 양산, 고성, 남해, 산청, 의령, 하동, 함양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6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353호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거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

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등”

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거창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숭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해야 한다.

③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그렇지 않다.

제3장 행동강령

제1절 공정한 직무수행

제9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안전심의 등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거창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2절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따른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제공이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7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 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사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의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술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
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3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의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
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
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행동강령운
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6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
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6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1항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 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거창군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9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2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0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견청취)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창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36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 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6조제3항제1호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8조제1항 관련)

1.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30만원

2. 적용기준

가.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다.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마.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2호서식] (제9조 관련)

이해관계 직무 회피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회피직무	<input type="checkbox"/> 의안심사 <input type="checkbox"/> 예산심의 <input type="checkbox"/> 행정감사조사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input type="checkbox"/> 회의	
회피원인	<input type="checkbox"/>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내용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16조제4항 관련)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제17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청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	--

활동사유 및 경과	
--------------	--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	--

활동기간 ~ (일간)
------	-------------------------

활동지역 (방문기관)	
----------------	--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참가자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제17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의원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	--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제18조제7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명서류 목록	※증명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제20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제21조제2항 관련)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금전 차용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명서류 목록

※ 증명서류(사본) 첨부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명서류 목록

※ 증명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제24조제1항)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주소	연락처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주소	연락처			
	법안·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제25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제25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69
----------	-----------

발의일자	2016. 11. 23.
발 의 자	박희순 의원 외 10명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에 대한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사항 구체화(안 제16조)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 금지 및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금품 수수 금지
- 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의 금품수수 금지
-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 등 열거

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사항 구체화(안 제18조)

- 강의 등의 대가로서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 금지
-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 자진신고 및 반납 조치
- 월 3회 이상 외부강의시 의장의 사전승인 필요

다. 경조사 등의 통지 제한과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강화함.(안 제22조 및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감사,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6. 11. 25. ~ 11. 3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6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354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653,830원”을 “1,703,44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p> <p>① (생 략)</p> <p>② 월정수당은 월 <u>1,653,830원</u>으로 한다.</p>	<p>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1,703,440원</u>----</p>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예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68
----------	-----------

발의일자	2016. 11. 24.
제 출 자	김종두 의장 외 10명

1. 제안이유

2017년도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사항인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 하여 2016년도 월정수당에서 3.0퍼센트를 인상코자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금액 변경(안 제6조제2항)
 - 1,653,830원 ⇒ 1,703,44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1) 「지방자치법」 제33조
-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시행 시 소요예산 확보

다. 합 의: 기획감사실(기획,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6. 11. 25 ~ 11. 30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창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6년 12월 28일

거창군 규칙 제1212호

거창군 창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

거창군 창조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창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

의안 번호	2016 ~ 71
----------	-----------

제출일자	2016. 12. 12.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1. 폐지이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14. 1. 7. 개정으로 시·군·구 발전협의회의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존치 필요성이 없는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창조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을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제2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6. 8. 4. ~ 2016. 8. 2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폐지현황: 9곳(창원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함안 고성 함양)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6년 12월 28일

거창군 규칙 제1213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제조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산업지원 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물류 또는 연구시설(이하 “공장시설 등”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와 제2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 가. 공장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나. 같은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회계상 별도로 회계처리 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 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투자유치 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라. 도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기존 공장과 비교,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7. “이전보조금”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8. “투자금액”이란 부지매입, 장비구입, 시설설치비 등을 말한다.
 9.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운영) ①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기금용자 절차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의 용자 절차 및 지원 기준은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장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용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장부지 매입비 용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입지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범위는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으로 하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는 군외 소재기업이 군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입지보조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12개월 기간 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은 공장 등록 후 5년으로 하되, 기업당 지원 총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간은 공장 등록 후 5년으로 하되, 기업당 지원 총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 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조금의 지급범위는 기업이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제11조(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군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도외기업의 본점 관내이전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내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설투자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업체가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20억 이상을 투자할 때에는 그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② 증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건물 등을 분양, 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투자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분양가격 감면)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대체입주기업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분양가격은 금융비용의 50퍼센트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이 최초 분양가의 2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입지여건이 불리한 부지는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로 한다.
-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 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 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 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 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조례 제21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원을 신청하는 투자자는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① 조례 제20조에서 정하는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시설의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비)의 100분의 50 이내
2. 의료시설 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
3.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

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 또는 용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 기간을 원래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용자금액
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용자금액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
4. 투자계획 이행사항
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2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고용 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이 3년 이내에 해고될 경우에는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 보다 감소될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0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칙에 정하는 기간”이란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용자금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군수가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용자금 지원계획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이나 용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⑥ 군수는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도내 유치금액이 건당 20억원 이상인 경우

2.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투자유치기업이 군수와 입주계약 또는 투자유치협약 등을 체결한 이후에 행한다.

③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가점을 주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추진된 지원사업은 이 규칙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7호서식】

관내기업 증설투자비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전화 팩스	
기존 소재지				
공장 이전지				
공장설립(준공일)			업종(분류번호)	()
공장증설 투자내역	과 목	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합 계	투자계획		비고
	토지 매입비			
	건축비			
	시설 설치비	기계장치 부속설비		
보조금 신청	건축공사 착수		백만원	
	공장등록(완료)		총 지원금액	백만원
			기 지원금액	백만원
			금회 신청 금액	백만원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증설 시설투자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1부 3. 건축비, 시설설치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건축 공정을 확인서 1부 5.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1.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공장등록증 1부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투자

입지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국적		
외국인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자내용	신고일				
	신고된 사업				
투자내용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금	원(USD	상당),	퍼센트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분	신규	증자	사업개시예정일		
시설입지 내역	소재지				
	면적	총 부지면적: 제곱미터, 시설면적 제곱미터(구입가격: 원/제곱미터)			
	업종	종업원 수			
	착공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방법					
보조금 신청액		만원(USD 상당)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div>					
거창군 수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 사업자등록증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고용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국적			
외국인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자내용	신고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금 원(USD 상당), 퍼센트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분	신규 증자		사업개시예정일			
소재지						
설립(이전)일자						
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	총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 신청액		만원(USD 상당)				
<p>「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 (또는 대리인) (전화)</p>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없음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 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국적	
외국인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자내용	신고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금	원(USD 상당), 퍼센트
투자방법	현금	자본채	산업재산권등
구분	신규	증자	사업개시예정일
설립(이전)일자	년 월 일	공장등록일자	년 월 일
소재지			
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	교육훈련 대상인원	교육훈련 제외인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비지급액		
보조금신청액	만원(USD 상당)		
<p>「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p> <p>거창군수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1.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			없음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조금 신청업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			

시설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국적				
외국인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자내용	신고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금	원(USD	상당),	퍼센트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분	신규	증자	사업개시예정일			
시설 내역	소재지					
	착공일 (건축허가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신·증설 개요	시설	계	건축물	기계장치	부속설비
		금액				
보조사업 담보방법						
보조금 신청액		만원(USD 상당)				
<p>「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p>						
거창군 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개월 이내 결산재무제표로 한정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4. 그 밖에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소(법인소재지)		전 화 번 호		
			팩 스		
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학교시설 <input type="checkbox"/> 주 택 <input type="checkbox"/> 지원시설				
	소 재 지				
	면 적	부 지	건 축 물		
			제공미터		제공미터
	건 물 구 조				
건축허가일		준공일			
투자유형	<input type="checkbox"/> 신 축 <input type="checkbox"/> 기존건물 매입				
투자금액	금 원 (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원	주택 :	원	지원시설 :	원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거 창 군 수 귀 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명자료 1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서식】

외국인투자

- 입 지 보 조 금
 고 용 보 조 금
 교 육 훈 련 보 조 금
 시 설 보 조 금
 이 전 보 조 금
 } 정 산 서

1. 보조사업 수행자

상 호 또는 명 칭	대 표 자	성 별
소 재 지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업 종 (주 생산 품)	사 업 개 시 일 자	

2. 보조사업 내용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수 행 내 역		
사 업 기 간	보 조 금 액	

3. 정산내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 (인)
(또는 신고인) (전화)

거창군수 귀하

- 붙 임 1. 사업추진 사진 (관련 장면 각 1장)
2. 시설내역, 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6 ~ 59
----------	-----------

제출일자	2016. 11. 21.
제 출 자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내 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대상 신설 등 개정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내 기업 증설투자비 지원규정 신설(안 제14조)

- 관내 기업(3년 이상, 10명 이상)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0억원 이상 투자 시 그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10억원 한도 지원

나.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규정 신설(안 제17조)

- 의료시설 등 서비스지원시설 신축비의 100분의 50이내 지원 등

다.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세부규정 추가(안 제20조제3항)

- 보조(융자)금 지원기업의 보조(융자)금 집행실태 매년 상·하반기 점검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
-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규정」 제9조의2

나. 예산 조치: '17년도 예산 980,736천원 기확보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6. 10. 28. ~ 11.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등 인

2016년 12월 28일

거창군 규칙 제1214호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의안 번호	2016 ~ 71
----------	-----------

제출연월일	2016. 12. 12.
제 출 자	도시건축과장

1. 폐지이유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위임근거인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존치이유가 없어져 이 규칙을 폐지함.

2. 주요내용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택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11. 7. ~ 11.2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6년 12월 28일

거창군 훈령 제402호

거창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거창군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상황관리"란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거창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거창군청에 둔다.

제4조(임무) 상황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재난발생 개요와 응급 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 관리
2. 재난상황의 상급기관 보고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전파
3.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지도 및 협조를 요구받은 사항 등에 대한 조치
4. 주요재난 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의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5조(지휘 및 감독) 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평일 주간에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야간 및 공휴일은 「거창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당직사령이 되어 상황실을 총괄 지휘·감독한다.

제2장 상황실 운영

제6조(상황실 운영 등)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 상시 운영한다.

② 상황실은 평일 주간에는 안전총괄과 소속직원이 근무하고, 야간 및 공휴일은 당직실에서 당직근무자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상황실장이 정원의 범위에서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실장이 군수의 지휘를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연말연시의 비상근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재난상황 또는 군수가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근무자의 복무) ① 상황실 근무자(이하 "상황근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하며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주간근무 : 그날 09 : 00 ~ 그날 18 : 00까지로 한다.

2. 야간근무 : 그날 18 : 00 ~ 다음 날 09 : 00까지로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상황근무에 임하여야 하고, 별표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상황근무자에 대해서는 당직, 행사지원 등 그 밖의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상황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3장 보고 및 전파

제8조(보고 및 전파 등) ① 상황근무자는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지체없이 보고하고, 소관부서와 유관기관·단체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 및 상황근무자는 그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 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나 팩스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보고체계 및 작성방법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재난상황 보고는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최초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여 실시간 수시로 보고 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성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기록유지 및 협조

제10조(기록유지) ① 상황근무자는 매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황실 근무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재난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대장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상황조치 요령, 비상연락망, 유관기관·단체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④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상황근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의 협조)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인사 및 후생복지 등

제12조(결원보충)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상황실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급식제공) ① 상황근무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황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근무환경 조성) ① 상황실은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쾌적한 근무환경이 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에게는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상황실은 상황관리와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근무수칙

- 상황실 근무자는 이 수칙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 -

1. 지휘계통과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
2. 준수사항
 - 지정 근무시간 30분전에 도착, 상황 인수·인계
 - 그날 상황근무자는 30분전에 상황실에 도착, 실장에게 근무신고 후 전 근무자로부터 상황을 인수받아 근무
 - 근무시작 즉시 NDMS에 등록하여 경상남도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신고
 - 전 근무자는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및 다음 근무자에게 모든 상황을 인계하고 상황실장에게 신고 후 퇴청
3. 보고서 작성기준
 - 재난상황 진전에 따라 수시 보고서 작성(최초 - 중간 - 최종)
4. 상황보고 및 전파
 - 군수, 부군수, 소관부서장에게는 상황실장 또는 상황근무자가 직접 보고
 - 유관기관 및 단체에 상황전파시스템, 유선, 팩스 등을 활용하여 전파
 - 주요재난 발생 등 긴급사안인 경우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5. 상황실 장비 등을 수시 점검·확인하고, 교대 시에는 상황 및 각종 비품의 인계·인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6.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7. 상황실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8.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상황실은 상황근무자 및 재난안전관련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 외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한다.
10. 재난상황 발생 시 상황실장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재난상황 보고서

즉시 보고 제 호

수신:

시행일시:

접수일시:

발신: 기관명 및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목:

1. 일시:

2. 장소:

3. 상황 개요(사고 원인)

4.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 별첨: 사망자·실종자 인적 사항

나. 재산피해

다.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 사항

가. 조치사항

나. 동원사항

- 인력: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장비: 대()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 전망 및 대책

작성 방법

1. 사망자·실종자 인적사항은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5란부터 7란까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

201 년 월 일(요일)

	구분	소속	직	성명	서명	비고
근 무 자	사령					
	반원					
	반원					
	○ 재난상황 이상유무 확인(주간 등) - 소속 직 성명 (인)					
지시 사항	○ ○					
주요 상황 관리 조치 내용	○ 재난상황 접수 및 메시지 처리 사항 - 접수 : - 처리 : ○ 주요 상황처리(교통사고, 화재등 각종 사건사고등) - ○ 그 밖의 사항 - 보고 및 전파 내용 :					

거창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의안 번호	2016 ~ 72
----------	-----------

제출일자	2016. 12. 12.
제 출 자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거창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거창군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상황관리”용어 정의

나.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임무, 지휘 및 감독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 제5조)

- 거창군 재난안전상황실은 거창군청에 둠
- 상황실 근무자의 임무 수행 사항
- 재난안전상황실장은 평일 주간은 안전총괄과장, 야간 및 공휴일은 당직사령이 되어 상황실을 총괄 지휘·감독함

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 상황실은 연중무휴 상시 운영하고 상황실의 근무반은 주간은 안전총괄과 소속직원, 야간 및 공휴일은 당직근무자가 근무 원칙

라. 근무자의 복무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 주간근무: 그날 09:00 ~ 그날 18:00까지, 야간근무: 그날 18:00 ~ 다음날 09:00
- 근무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별표의 근무수칙 준수

마. 근무 중 보고 및 전파, 보고체계 및 작성방법, 기록유지, 재난관리책임 기관과의 협조 등을 정함(안 제8조 ~ 제11조)

- 상황근무자는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지체없이 보고하고, 소관부서와 유관 기관·단체 등에 전파
-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는 NDMS원칙, 전화, 팩스 등의 방법 병행
- 상황근무자는 매일 별지 제2호서식 상황근무일지를 기록·관리

바. 인사 및 후생복지에 대하여 정함(안 제12조 ~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사항: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전국 제·개정 현황
 - 제정완료: 170개소(경남 6)
 - 제정 중(입법예고): 6개소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고시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28.

거 창 군 수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465,268,062	447,910,156	17,357,906	3.88%
일반회계	414,709,635	399,802,877	14,906,758	3.73%
특별회계	50,558,427	48,107,279	2,451,148	5.10%
공기업특별회계	24,233,323	21,645,192	2,588,131	11.96%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7,478,581	7,433,185	45,396	0.61%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6,754,742	14,212,007	2,542,735	17.89%
기타특별회계	26,325,104	26,462,087	△136,983	△0.52%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43,426	736,331	7,095	0.9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0,000	0	30,000	순증
주차장관리특별회계	854,630	860,922	△6,292	△0.73%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477,342	1,679,718	797,624	47.49%
수질개선특별회계	4,458,147	4,164,718	293,429	7.05%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79,290	703,870	△24,580	△3.49%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17,082,269	18,281,528	△1,199,259	△6.56%

2.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465,268,062	447,910,156	17,357,906	3.88%
지방세수입	21,184,196	19,898,290	1,285,906	6.46%
세외수입	16,293,695	15,265,117	1,028,578	6.74%
경상적세외수입	11,183,872	9,998,102	1,185,770	11.86%
임시적세외수입	5,109,823	5,267,015	△157,192	△2.98%
지방교부세	184,500,000	192,573,683	△8,073,683	△4.19%
조정교부금등	13,800,000	10,000,000	3,800,000	38.00%
보조금	140,891,478	135,587,848	5,303,630	3.91%
국고보조금등	115,708,078	110,807,512	4,900,566	4.42%
시도비보조금등	25,183,400	24,780,336	403,064	1.6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8,598,693	74,585,218	14,013,475	18.79%
보전수입등	66,678,602	53,848,791	12,829,811	23.83%
내부거래	21,920,091	20,736,427	1,183,664	5.71%

3.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465,268,062	447,910,156	17,357,906	3.88 %
일반공공행정	31,629,528	27,909,702	3,719,826	13.33 %
공공질서및안전	4,570,397	6,315,812	△1,745,415	△27.64 %
교육	4,593,983	4,826,844	△232,861	△4.82 %
문화및관광	14,837,815	12,109,025	2,728,790	22.54 %
환경보호	64,150,240	58,492,330	5,657,910	9.67 %
사회복지	88,503,498	86,384,597	2,118,901	2.45 %
보건	5,977,551	7,234,334	△1,256,783	△17.37 %
농림해양수산	91,993,273	95,473,159	△3,479,886	△3.64 %
산업·중소기업	4,962,580	7,594,815	△2,632,235	△34.66 %
수송및교통	21,021,670	17,629,157	3,392,513	19.24 %
국토및지역개발	30,030,822	27,427,784	2,603,038	9.49 %
예비비	40,295,698	36,777,464	3,518,234	9.57 %
기타	62,701,007	59,735,133	2,965,874	4.97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28.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32-10 외 9건(부여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459-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산길 388-81	2009-04-01	2016-12-28	중산마을로 가는 길임이 반영 된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22-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68-8	2009-07-02	2016-12-28	행정구역명(거창+함양군) 활용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25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54	2009-12-28	2016-12-28	1994년 거창읍 시가지 간선도 로명 결정에서 유래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84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32-10	2009-04-01	2016-12-28	성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83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32-18	2009-04-01	2016-12-28	성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89-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36-9	2009-04-01	2016-12-28	마을 북동쪽 모래독걸 남쪽에 서 아월천 서쪽일때까지의 논 들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1067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길 13-245	2009-04-01	2016-12-28	산수 경치가 좋아서 이름 붙여 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8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538-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4길 127-11	2009-04-01	2016-12-28	행정구역명 도리가 반영된 네 번째 도로	
9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10-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4길 92-24	2009-04-01	2016-12-28	행정구역명 마상리가 반영된 네번째 도로	
1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산173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790	2009-07-02	2016-12-28	거창군 가조면과 합천군 가야 면을 잇는 도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 - 97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97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 12. .

거창군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칭	위치		시행규모						시행구간	최초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²)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97호선)	거창	가지	소로	2	97	100.0	8.0	835	거창읍 가지리 401-7번지 ~ 거창읍 가지리 1698-5번지	경고103호 (78.3.20)	실시계획인기 일로부터 ~ 2017.6.30

2. 사업시행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3. 사업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소로 2-97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5,593	835					
1	거창읍 가지리	401-7	도	264	62		거창군			
2	"	401-1	전	182	82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41, 102동 603호(신흥아파트)	박인숙			
3	"	1698-1	도	127	29		국(국토교통부)			
4	"	463-6	전	29	11		거창군			
5	"	463-5	전	83	75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41, 102동 603호(신흥아파트)	박인숙			
6	"	209-5	전	415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60, 807호 (재송동,아이에스타워)	주식회사 삼성			
7	"	209-2	전	832	273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개화1길 38-11	이창희			
8	"	211-1	과	77	55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41, 102동 603호(신흥아파트)	박인숙			
9	"	210	묘	541	149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9길 47	임복기			
10	"	1698-11	도	43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60, 807호 (재송동,아이에스타워)	주식회사 삼성			
11	"	218-2	과	67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60, 807호 (재송동,아이에스타워)	주식회사 삼성			
12	"	210-1	도	104	15		거창군			
13	"	1698-5	도	850	43		국(국토교통부)			
14	"	215-5	도	1979	37		거창군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우편번호 : 50132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이나 전화(055-940-3594), FAX(055-940-3579)

E-mail : qkrrb0000@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거창군 공고 제2016 - 1273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 - 102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02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 12. 26.

거창군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칭	위치		시행규모						시행구간	최초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²)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102호선)	거창	가지	소로	2	102	220	8.0	2,092	거창읍 가지리 299-1번지 ~ 거창읍 가지리 349-10번지	경고103호 (‘78.3.20)	실시계획인가 일로부터 ~ 2018.12.31.

2. 사업시행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3. 사업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소로 2 - 102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3,923	2,092					
1	거창읍 가지리	299-1	도	49	11		거창군			
2	"	300-1	도	56	44		거창군			
3	"	301-2	대	205	65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23 101동 104호 (신정동,현대아파트)	이순례			
4	"	301-1	대	93	52	거창읍 가지리 304	정권수			
5	"	302	대	60	35	경남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9	이수용			
6	"	1719-9	도	3130	597		국(건설부)			
7	"	303	대	228	58	경남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9-4	정해수			
8	"	292-3	대	288	97	부산시 총무로 4가 5	경상남도 향교재단			
9	"	304	대	373	14	경남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13	김수길			
10	"	292-2	대	20	4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24	학교법인 거창명륜학원			
11	"	304-1	도	34	34	경남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13	김수길			
12	"	292-1	대	40	2	부산시 총무로 4가 5	경상남도 향교재단			
13	"	305-1	대	215	89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259, 302동 1004호 (감계힐스테이트 3차아파트)	이상학			
14	"	289-2	대	360	3	울산광역시 남구 거마로 22, 102동 905호 (옥동,현대대륙아파트)	윤수재			
15	"	305-2	대	94	5	경남 통영시 무전1길 23, 103동 1202호 (무전동,한진로즈힐비치)	박훈			
16	"	288-3	대	397	21	부산시 총무로 4가 5	경상남도 향교재단			
17	"	305-3	전	38	35	경남 통영시 무전1길 23, 103동 1202호 (무전동,한진로즈힐비치)	박훈			
18	"	288-4	대	53	36	부산시 총무로 4가 5	경상남도 향교재단			
19	"	287	대	192	2	경남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24	최희자			
20	"	349-14	임	358	180	부산시 총무로 4가 5	경상남도 향교재단			
21	"	349-9	임	1521	310	부산시 총무로 4가 5	경상남도 향교재단			
22	"	285	전	4175	96	부산시 총무로 4가 5	경상남도 향교재단			
23	"	349-10	전	1944	302	부산시 총무로 4가 5	경상남도 향교재단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우편번호 : 50132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이나 전화 (055-940-3594), FAX(055-940-3579), E-mail : qkrrb000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3-17, 3-40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 공고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3-17, 3-40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 12. 28.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면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 점	종 점		
교통 시설	신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이설도로공사 (군도16호선)	신원면	덕산	중로	3	17	1,145	12	43,763	신원면 덕산리 산188	신원면 덕산리 359-3	거창군 고시 2008-43호 (2008.09.17)	○당초 '11.11.04~ '16.12.31 ○변경 '11.11.04~ '17.12.31
교통 시설	가북지구 저수지 독높이기 사업에 따른 이설 도로 공사 (군도6호선)	가북면	박암 동석	중로	3	40	1,257	12	31,881	가북면 박암리 686-4	가북면 몽석리 1197-2	거창군 고시 2008-43호 (2008.09.17)	○당초 '12.12.14~ '16.12.31 ○변경 '12.12.14~ '17.12.31

2. 사업 시행자

가)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35

나)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3.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및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055-940-5535)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
6.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